

# 시설공사사무처리규정

개정 2018.06.28. 개정 2018.12.04. 개정 2019.05.22. 개정 2022.03.04.

## 제1조 (목적)

교내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공사의 발주, 계약 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관련 법령 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사학기관재무회계처리규칙)을 기준으로, 본 교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서 공사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발주, 계약 사무에 적용된다.

## 제3조 (담당부서)

공사계약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시행한다. <개정 2016.3.31., 2019.05.22. 2022.03.04.>

## 제4조 (계약의 방법)

- ① 계약의 방법은 지명경쟁 또는 공개경쟁으로 하며 그 시행방법은 따로 정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- ② 입찰 참여업체 선정은 본교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업체로 정한다. 다만, 일정 규모(3,000만원, 이하 같다)이하인 공사 및 공개경쟁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 있다
- ③ 지명경쟁입찰은 3개 업체 이상의 지명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. 다만, 지명대상자가 3개 업체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.

## 제5조 (수의계약)

-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1.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의 기술용역,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, 구조,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
  2. 긴급한 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을 시행할 시간이 없을 때
  3. 재입찰을 시행하여도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

## 제6조 (예정가격의 비치)

- ① 공사 추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(3,000만원, 이하)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예정가격 작성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되,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

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- ③ 총장은 공사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예정가격을 정 할 수 있다.

#### 제7조 (입찰서 제출)

- ① 입찰서는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, 철회,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.
- ③ 입찰 구비서류(국가계약법상 정한 구비서류)

#### 제8조 (입찰보증금)

-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으로 현금, 시중은행의 보증수표, 보증서(건설공제조합, 전기공사공제조합, 정보 통 신공제조합 및 기타 관련 공제조합) 또는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① 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한다.
- ②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.
-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켜야 한 다.

#### 제9조 (입찰의 무효)

입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무효로 할 수 있다.

- ① 위임장 또는 수임권한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한 입찰
- ②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또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에 부족이 판명된 입찰
- ③ 소정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
- ④ 입찰사항 중 금액 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입찰
- ⑤ 타인의 대리인을 겸하였거나 또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을 한 자가 한 입찰
- ⑥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

#### 제10조 (개찰 및 낙찰선언)

- ① 입찰서의 개찰 후 본교가 정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.
- ② 만일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한다.
- ③ 재입찰 후에도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가 없을시 총장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재입찰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 공고한다.

#### 제11조 (낙찰자의 결정)

경쟁 입찰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.

#### 제12조 (계약서의 작성)

- ① 공사 담당부서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 (계약의 목적, 계약금액, 이행기간, 계약보증금, 위험부담, 지체상금, 연대보증회사 및 기타 필요한

사항)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와 낙찰자에게 공사 내역서를 제출받고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.

-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, 내역서를 해당 공사 입찰조건에 부합되도록 본교에서 조정할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체결 이후에 본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 산출서 또는 일위 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#### 제13조 (계약보증금)

-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,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대보증회사(1인 이상)를 세워야 한다. 다만, 연대보증회사를 세우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이상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(입찰보증서에 준용)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 (지체상금)

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체 1일당 1,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#### 제15조 (하자보수보증금)

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.

#### 제16조 (준용)

공사계약 업무와 관련, 본 요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)을 준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#### 제17조 <삭제 2019.05.22.>

#### 제18조 <삭제 2019.05.22.>

### 부 칙

#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6.03.31.)

#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06.2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12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